

[서식 예] 파면처분 취소청구의 소

소 장

원 고 O O (주민등록번호) OO시 OO구 OO길 OO (우편번호 OOO-OOO)

피 고 △△지방경찰청장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파면처분 취소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가 2000. 0. 0.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원고는 19○○. ○. ○.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이래 19○○. ○. 부터는 ◎◎파출소에서 파출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중 19○○. ○. ○. 12:00 위 경찰청 앞 ☆☆식당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관내 유지나 업소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지 말라는 국무총리 지시사항을 어기고 방범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전□□에게서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명목으로 금 500,000원을 받았다는혐의로 피고로부터 20○○. ○. ○. 자로 파면처분을 받았습니다.
- 2. 파면처분의 위법성



- 가. 원고가 위와 같이 위 전□□으로부터 금 500,000원을 받은 사실은 이를 인정합니다.
- 나. 원고가 받은 위 금원은 원고가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받은 것이 아니며, 관내 유지나 업소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지 말라는 국무총리의 지시 역시 뇌물을 수수하지 말라는 취지인 것이지, 이 사건과 같이 방범자문위원을 대신하여 파출소장이 자율방범대원에게 야식을 사주라고 주는 금품을 수수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그 징계이유가 없는 처분으로써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.
- 다. 설혹 원고의 위 금품 수수가 국무총리의 지시에 위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, 원고가 받은 금원은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로 모두 지출하였지 원고의 사 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, 원고는 경찰로 재직한 30여년 간 한 번도 징계처분을 받은 바 없이 모범적인 경찰공무원 생활을 하였으며, 오히려 국 무총리 표창을 한 번 받은 외에 총 20여회의 표창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,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파면처분은 그 재량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 라 할 것입니다.

3. 결론

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파면처분은 원고에게 파면의 사유가 없음에도 이루어진 처분으로써 위법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, 설혹 형식적으로는 징계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, 원고가 수수한 금원의 액수, 원고의 30여년 간의 모범 적인 경찰로서의 생활, 금원의 소비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파면처분 은 그 재량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합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

행정처분서

1. 갑 제2호증의 1~21

각 표창장 사본

1. 갑 제3호증

진술서(〇〇〇)

첨 부 서 류



1. 위 입증서류 각 1통

1. 소장부본 1통

1. 납부서 1통

2000. 0. 0.

원 고 O O O(인)

○ ○ 행 정 법 원 귀 중

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제소기간	※ 아래(2) 참조
청 구 인	피처분자	피청구인	행정처분을 한 행정청
제출부수	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 큼의 부본 제출	관련법규	행정소송법 9 ~ 34조
비 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
불복방법 및 기 간	· 항소(행정소송법 8조, 민사소송법 390조) ·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(행정소송법 8조, 민사소송법 396조)		

※ (1) 관할법원(행정소송법 9조)

- 1.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. 다만, 중앙행정기관,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과 국 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2.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

※ (2) 제소기간(행정소송법 20조)

- 1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. 다만,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.
- 2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(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)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.